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 정 : 2004. 9. 1.

개 정 : 2008.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교의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에게 적용하며, 대학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교직원 및 학생이 업무, 학업과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에 의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라 함은 위험시설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교직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안전장치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출입금지, 작업중지, 안전교육 실시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보건관리“라 함은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보건교육실시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작업장“이라 함은 연구실, 실험실, 기계실, 전기실, 저장소, 강의실, 사무실 등 교직원 및 학생이 일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옥내·외의 모든 장소를 말한다.
5. “위험시설“이라 함은 대학교내의 전기, 보일러, 고압가스, 도시가스, 위험물, 유독물, 방사선, 공작기계기구, 옥외부대시설, 건설현장 등 위험성이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하거나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7.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유해한 업무를 행하는 실내작업 및 기타 작업장의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료의 채취 및 분석·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대학교내의 모든 업무 및 관리에 있어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과 보건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의 책임과 의무) 전교직원 및 학생은 이 규정과 안전보건에 관련된 제반 법규, 기준 및 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6조(총괄지휘감독자) ① 총괄지휘감독자는 총장이 되며,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보건유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조건 개선 및 적절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정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총괄지휘감독자는 원활한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기획관리처장이 되며, 안전보건업무의 총괄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와 보건관리책임자를 지휘·감독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관련 사항
2.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직원 및 학생의 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안전관리책임자)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설관리팀장이 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4. 방호장치 및 안전에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5. 작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6. 관계법령 또는 이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조치
7. 환경시설의 적정관리 지도 및 독려
8. 기타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보건관리책임자) ① 보건관리책임자는 보건소장이 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
3. 보건 상 유해한 작업조건 및 시설의 개선
4. 보건용 보호구, 구급용구 등의 비치검사
5. 기타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각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자로서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1. 작업장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2. 작업복·보호구 및 안전장치 점검과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 감독
5. 불안정한 작업방법 및 행동의 개선
6. 최종퇴실점검자의 점검표 기록에 대한 조치와 보안유지
7. 기타 당해작업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안전관리

제11조(안전조치) 교직원 및 학생이 업무,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2.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3. 기계, 기구 및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4. 건축물의 붕괴, 물체의 낙하 등의 위험
5. 중량물의 운반, 설치, 해체작업 등에 의한 위험

제12조(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의무) 전교직원 및 학생은 안전에 관한 제반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는 등 사고예방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미경험자 작업제한 등) 위험시설을 관리하는 교직원은 소정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충분한 교육을 받아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경험이 부족한 자는 위험시설을 임의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각 위험시설에는 소정의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성능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책임자 및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해당 작업장과 위험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발견된 위해요소는 개선조치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 외에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위험물질 및 유독물 취급) 위험물질 및 유독물을 저장·취급하는 부서장은 구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변에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물품을 두거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유자격자가 직접 취급하거나 그 감독 하에 행하여야 한다.
3.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4. 적절한 환경을 갖춘 저장소에 성상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기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표지 부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작업장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별 안전 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표지(수리 중, 위험, 사용 또는 출입금지, 금연, 낙하위험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전기, 고압가스, 도시가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2. 위험물 또는 유독물, 방사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작업상 위험성이 있는 장비를 설치한 장소
4. 추락 및 낙하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
5. 도로교통 및 통신시설물
6. 기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제17조(출입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해당부서장이 지정한 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2. 위험물 또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장소
3. 고압가스, 도시가스, 방사성물질 등을 보관 또는 취급하는 장소
4. 기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제18조(환경오염 방지)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부서장은 유해물질 사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을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환경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교통안전) ① 대학교내 차량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는 교직원 및 학생에게 차량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건물, 기술장비 등의 점검 및 보전) 교직원 및 학생은 사용하는 건물, 차량 운반구, 기술장비, 기타 대학교 유형고정자산의 정리정돈에 유의하여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의 보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성능보장 및 안전장치) ①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술장비 및 공기구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정의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일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소관부서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보호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 또는 저온물체, 저온물량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물을 취급하는 경우
3. 요란한 소음을 발하는 경우
4. 감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피부에 장해를 주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7. 기타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업무

제23조(일과시간외의 위험업무 수행)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일과 시간 후에 계속하여야 할 때에는 두 사람의 교직원이 입회하여야하고 당직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안전

제24조(조직) ①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총장은 대학교에 방화관리자를 둔다.

② 단위부서별로 화기책임자를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화기정책임자 : 방화관리자
2. 화기부책임자 : 실별 책임자

제25조(임무) ① 방화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화관리자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소방계획서를 소방법에 의거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화재예방에 따른 소방업무
3. 주기적인 소방교육훈련 및 교육
4. 기타 소방관련 업무

② 화기정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시 주관부서에 보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화기사용 및 위험물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화재발생시 소방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소방서 및 관계기관에 연락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4. 인화성 및 발화성 물질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실내에서의 위험물 사용 및 보관과 전열기구의 사용은 방화관리자에게 보고한다.
6. 각 학부 및 실에 배치된 소화기를 유지 관리하고 손 망실 시 자산관리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에 보고한다.

③ 화기부책임자는 화기정책임자를 보좌하고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26조(자위소방대 편성) ① 화재의 발생 및 기타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 운영한다(별표 제1호).

② 휴일 및 야간에는 다음과 같이 자위소방대를 편성 운영한다(별표 제2호).

제5장 보건관리

제27조(보건조치) 보건관리책임자는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스, 방사선, 소음, 공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 조작, 정밀조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 장해

제28조(보건소 운영) ① 보건관리책임자는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대학교내에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무실에는 응급처치나 경미한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작업환경 측정) ① 보건관리책임자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강렬한 소음 및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작업장
2.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3. 기타 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② 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시설 및 설비 개선 또는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건강진단) ① 보건관리책임자는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 건강진단 : 일반교직원
2. 종합 건강진단 : 일반교직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3. 특수 건강진단 : 유해물질 취급대상 직원
4. 임시 건강진단 : 유해물질 중독의 증상이 있거나 당해물질 취급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교직원이 다수 발생할 경우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건강진단(일반 및 종합건강진단)은 매년 2/4분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건강진단의 범위) ①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을 행한다.

1. 감각기,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신경계, 기타 임상의학적 검진 또는 검사
2. 신장, 체중, 시력, 색맹, 청력의 검사
3. 기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검사

② 제1항 제2호의 검사 또는 검진은 의사에 의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비밀누설의 금지) 건강진단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33조(예방접종) 교직원 및 학생은 건강관리상 행하는 각종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건강관리상 필요한 의사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진단 결과조치) 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
2. 정신질환
3. 기타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5조(긴급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 및 학생이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목격한 자는 당해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재해발생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지체 없이 사고현장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결되기 전에는 사고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조사 및 그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조사반을 구성, 운영하거나 전문가에게 직접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고발생시 소속부서장은 사고사실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즉시 사고속보(별표 제3호)를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추후 사고조사보고서(별표 제4호) 및 안전사고기록카드(별표 제5호)를 작성 보고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항의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총괄지휘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사고재발 방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동종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교직원 및 학생에게 교육 또는 사고사례 전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사고대장 관리) 모든 사고조사보고서는 작성년도별로 비치하고, 사고분석에 따른 통계를 유지 관리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재해보상) 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재해보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0조(상벌)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교직원,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을,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사항을 위반하여 대학교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교직원, 학생에 대하여는 징계조치 등의 상벌을 인사관리담당부서에 의뢰토록 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예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교직원, 학생
2. 안전보건업무 처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교직원, 학생

③ 제1항의 징계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대학교에 손해를 끼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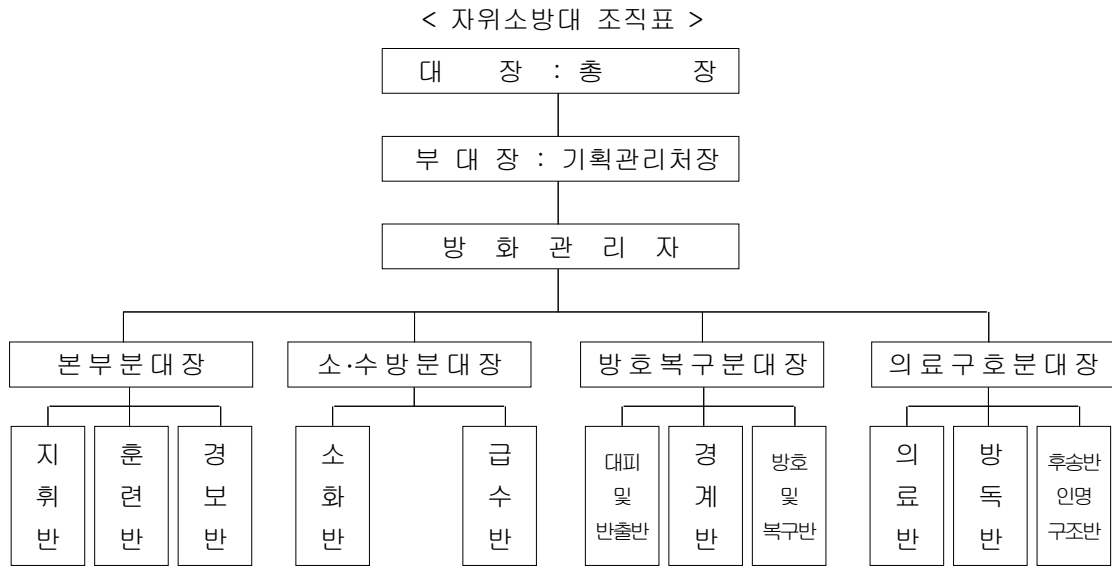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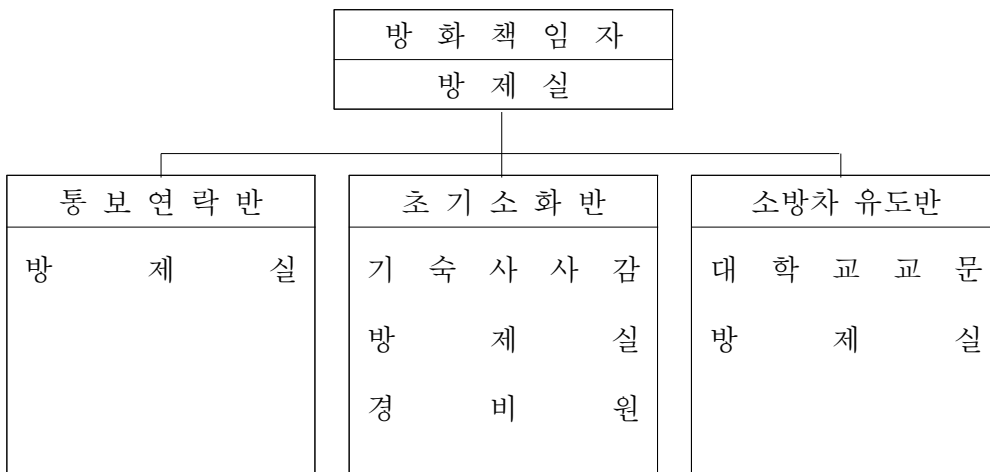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호)



(별표 2호)

< 공휴일 및 야간자위소방대 조직표 >



(별표 3호)

사고속보

발 생 일 시		20	날 짜 :		사 고 종 별	
발 생 장 소					귀 책	
사 고 결 과						
피 해 내 용						
사고 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주 소		
사 고 개 요	* 사고원인등을 6하원칙에 의거 작성					
조 치	1. 수습상태 2. 문 제 점 3. 의 견 4. 기 타 (지연사유 등)					

* 사고종별에 따라 특성을 고려하여 본양식을 변경사용 가능함.

(별표 4호)

사고조사 보고서

1. 사고발생 종 류		2. 사고발생 일시	
3. 사고발생 장소			
4. 사 고 상 황			
5. 사 고 원 인			
6. 사고발생전의 상태			
7. 사고복구일시 또는 그 예상			
8. 사고의 결 과	가. 사고복구 기 간		
	나. 응급처치		
9. 방 지 대 책			
10. 사고복구 소요비용 (자산상 손해)			
11. 기타 참고사항			

(별표 5호)

안전사고기록카드

20

관 리 번 호				부 서 명			
사 고 자 성 명		세	남, 여	직 급		소 속	
사 고 발 생 일	년	월	일	발 생 장 소			
상 해 정 상		상해부분				손실일수 현 재	일 조정일
사 고 내 용 :							
가 족 사 항	부 모	세 세	기타가족	세 세	부 양 의 무		
감독자 과실은 무엇인가?							
근무자 과실은 무엇인가?							
제3자 과실은 무엇인가?							
불안전 작업환경은 무엇인가?							
작업방법의 결함은 무엇인가?							
불안전 행위는 무엇인가?							
무슨 공구·기계 및 재료를 썼는가?							
직 접 원 인				간 접 원 인			
응 급 처 치	<input type="checkbox"/> 가 료 <input type="checkbox"/> 불가료 (가료내용)			기 타			
상 해 정 도	<input type="checkbox"/> 사 망 <input type="checkbox"/> 일시노동불능		<input type="checkbox"/> 영구 전노동불능 <input type="checkbox"/> 불휴상태		<input type="checkbox"/> 영구 일부노동 <input type="checkbox"/> 통원치료		
재 해 손 실	직접손비	원		배 상 비	원		
	간접손비	원		기 타			
직 원 경 력	입소년월일	년	월	일	해당직종 경력		년 개월
방 지 대 책							